

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(김소양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1월 20일  
발 의 자: 김소양 의원(1명)  
찬 성 자: 김소영, 김진수, 성중기,  
송재혁, 신정호, 여·명,  
이석주, 이성배, 이종환  
의원(9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는 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에서는 이를 반드시 요청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함.
- 나. 제9조제3항 중 “실시여부를”을 “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”으로 함.
- 다. 제9조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나머지 비용은”을 “나머지를”로 함.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.”를 “구청장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실시여부를”을 “실시와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제3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”으로, “나머지 비용은”을 “나머지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⑤ (생 략)

⑤ (현행과 같음)

문서번호

2022010700000004

## 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김소양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채소영 주무관

접수일 : 2022.01.07

회신일 : 2022.01.13

내용문의 : 02-2180-7953

###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예산정책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(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)에 따라, 기존에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상위법인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게 되어 안전진단 실시 요청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경우 비용발생의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의 개정조례안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주 무 관	채소영
	☎ 02-2180-7953
	e-mail : liz1998@seoul.go.kr